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구분	관할지역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교육업무 담당자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43	02-6711-2912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14	02-3783-8355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14	033-815-1058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13	033-820-2552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및 기장군	051-520-0525	051-520-0565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6-0526	052-226-0563
경남지사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53	055-269-0519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055-371-751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42	062-949-8718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정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31	063-240-85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24	063-460-3613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53	061-689-4912
전남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02	061-288-8715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2	064-797-7525
충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및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및 강화군	032-510-0516	032-5100-588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28	031-259-717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15	031-828-194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8	031-481-755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14	031-785-3359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19	032-680-655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25	053-609-057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한다), 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37	053-650-681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38	054-271-2014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17	054-478-8063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및 태안군	042-620-5611	042-620-5676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및 단양군	043-230-7122	043-230-7119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및 예산군	041-570-3423	041-570-3406

위험성평가 교육 이렇게 받으세요



01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교육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 실시
평가담당자 교육	서비스업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 실시 제조업 및 건설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 기관에서 실시

- ※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공단)은 <http://www.koshats.or.kr>에서 신청
- ※ 평가담당자 교육(민간기관)은 <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02 민간교육기관

- 평가담당자교육(제조업 및 건설업)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주)경남안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성로 72번길 5-6 3층	055-277-5000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시 달서구 상서로동북로 308	053-586-9300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19-1	043-212-4611
(주)대한산업안전본부	대전시 유성구 우성대로 774(청양빌딩 2층)	042-825-4506-7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빌딩	02-860-7062
(사)대한안전교육협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7 1205호 비산동 안양벤처텔	070-4355-4704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로95 공천타워 602호	031-411-8410
(사)단법인안전보건진흥원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52(독산동) 독산빌딩 3층	02-804-7900
산업훈련원(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301(고전동, 원원프라자)	070-7006-8750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남 순천시 고지5길 3 (가곡동)	061-742-1135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77-19 동선빌딩3층	02-2612-5530
한국산업안전컨설팅(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18 (상도동 2,3층)	054-253-3632
(사)한국산업위생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송내동381) 송산빌딩 6층	02-782-33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055-7510-948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38 이현빌딩 301호	02-869-0390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 강서구 대저로 284 한국안전기술지원단빌딩	1544-2264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전벤처빌딩 402호	031-480-8504
한국보존협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6층 안전환경혁신센터	02-2624-0338
(사)한국산업위생협회 호남지역본부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 16(월출동 2층)	02-782-3380
한국RMS(주)	전남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451, 2층 (덕암터운)	061-691-5796-7
(사)한국안전진흥협회	서울 서초구 방배로 22, 삼원빌딩 301호	02-468-6080-2
(주)에이소직업전문학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2	02-702-4020
(주)기메카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3층	02-337-4031-2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 해산빌딩	02-2046-0486
(주)대한산업안전문화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33, 2층(부곡동 537-11)	031-365-5365
한국안전관리협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87-1 성훈프라자 205호	042-822-4118
(주)리빙뱅크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대리타워B동 322호	070-8786-8592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및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01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 중 일부 또는 해당사업장의 위험포인트를 중점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02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

- 전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및 소속 현장 / 전문건설업체 본사 및 소속현장

03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당 매년 2회 신청 가능)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가능(사업장회원으로 회원가입시)

04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설팅 (요청서)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 신청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 위원회	인정 결과 통보(사업장) 미흡 불인정 및 결과통보(사업장)
공단	사업주	사업주	공단	공단	공단

05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06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가능(사업장회원으로 회원가입시)

07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부장관이 별도 정함)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위험성평가”로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예방!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0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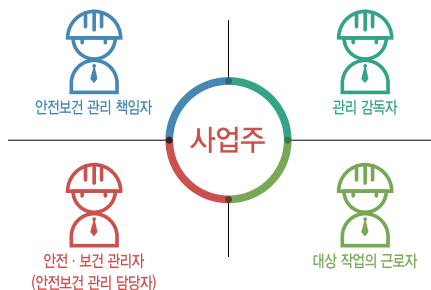
02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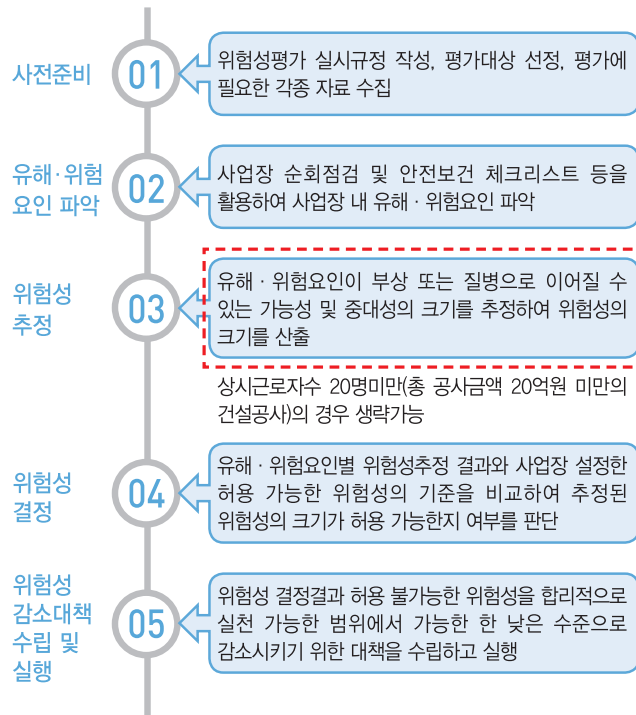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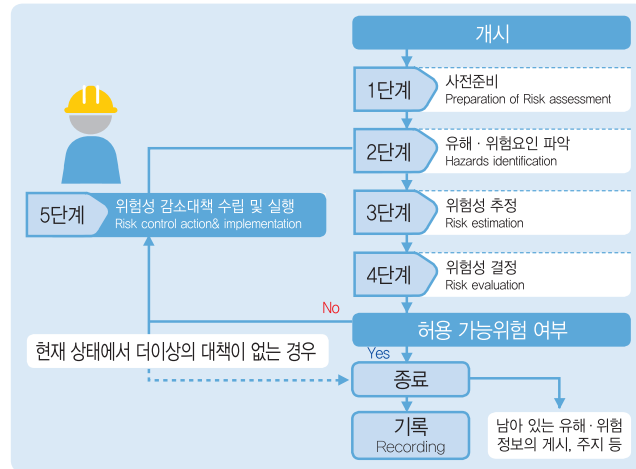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4조(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마당
 -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0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 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는 이렇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는 이렇습니다.



01 위험성평가의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참여

02 위험성평가의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 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03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를 도와드립니다.



01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이란?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및 모바일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입니다.



02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성은?

- 위험성평가 실시
 - ※ 위험성평가(5단계)방법 : 743개 업종 표준모델 제공
 - ※ 체크리스트방법 : 1,063개 표준모델 제공
- 위험성평가 가상체험(10개 업종)
- 위험성평가 업종별 사례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평가담당자 교육 신청(민간기관), 인정 심사 신청(산재예방활동) 등
- 모바일 웹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동영상 및 홍보자료 등(11종)

